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8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미국 (IRS) - 인바운드 대기업 대상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

배경 #1

- 2023년 10월 20일, IRS는 대기업 및 고소득 개인 납세자가 미지급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규정 준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IR-2023-194).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도입 이전에는 수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소득 납세자들이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미국 과세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슈 #1

IRS 발표에 따르면, 인바운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S는 미국에서 상품을 유통하면서 미국 내 활동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외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법인들은 미국 내 적절한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이전가격을 적용하여 연도마다 손실 또는 극히 낮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IRS는 약 150개 인바운드 대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Nudge Letter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경고 통지서(Compliance Alerts)를 발송하여 미국 내 납세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자체적인 조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배경 #2

- 2017년, IRS의 대기업 및 국제 사무(LB&I) 부서는 "Inbound Distributor Campaign"을 포함한 13개의 "캠페인"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RS는 캠페인을 통해 인바운드 유통업체가 중산층 소비자가 주요 수요자인 미들마켓(middle market)에서 손실 또는 적은 이윤이 아닌 적절한 보상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미들마켓에서 인바운드 유통업체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IRS의 판단 하에 "Inbound Distributor Project"라는 시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슈 #2

IRS 발표에 따르면, Inbound Distributor Campaign 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조달된 상품을 유통하는 미국 유통업체들은 수행기능 및 위험부담에 상응하지 않은 손실이나 낮은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LB&I 부서는 세무 대리인이 연방소득세법(IRC) 제482조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하였고, 해당 캠페인은 이슈 기반 검토를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

Letter 6607(Nudge Letter)에 대한 답변 방향

IRS 는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에 따라 2017-2021 세무신고서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관리 리스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들에게 Nudge Letter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경고 통지서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Nudge Letter 에 대한 답변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ion 1: 회사가 연방소득세법 §482 (IRC Section 482)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 미국 내 유통 및 판매 활동과 관련된 기능, 자산 및 위험에 대한 설명과 이전가격 산정방법을 포함한 회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전가격 분석을 위해 사용된 분석대상법인, 수익성 지표 및 정상가격 범위와 회사의 유통 활동과 관련된 특수관계 공급업체 정보(회사명, 손익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방 소득세법 (IRC) §482 및 그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기간 동안 손실 또는 낮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Option 2: 회사가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문구와 함께 신고된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사유 설명 시 "Response to Letter 6607"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 서면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 1면 상단에 "Response to Letter 6607"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지정된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 수정신고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시 Revenue Procedure 2015-40, 2015-35 I.R.B. 236에 따라 상호합의(M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ion 3: 회사의 답변을 위한 30 일의 추가 기일 요청

관련 가산세

IRS의 신규 이전가격 관리 계획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과세가 됐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산세

중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Substantial Misstatement Penalty)

- 연방소득세법 (IRC) §6662(e)(1)(B)(ii)항 및 1.6662-6(c)항에 기술된 조정 가산세는 IRS가 연방소득세법 (IRC) §482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자 총 수입의 10% 또는 USD 5백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20%

심각한 신고불성실 가산세(Gross Misstatement Penalty)

- 연방소득세법 (IRC) §6662(h)항은 §6662(e)항의 문구를 대체하며, 연방소득세법 (IRC) §482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납세자 총 수입의 20% 또는 USD 2천만 달러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가산세율: 40%

이자율

-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연방 단기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적용
-

부과제척기간

- 이전가격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 납세자가 신고된 전체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누락한 경우, §6501(e)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6년으로 연장됩니다.
- IRS는 순영업손실(NOL)이 발생한 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더라도 당해연도 신고분에 포함된 경우, 이월된 순영업손실을 (NOL)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외특수관계거래로 인해 미국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월된 순영업손실(NOL)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전승인제도 (APA) 2022 년 연간 보고서

2023 년 12 월 19 일 중국 과세당국(이하 "STA")은 2005 년부터 2022 년까지 중국 APA 현황에 대한 APA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과세당국은 2022 년 말까지 쌍방 APA 116 건과 일방 APA 114 건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개요

체결된 APA 의 증가세: 중국 과세당국은 2022 년 총 34 건의 APA 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19 건은 일방 APA, 15 건은 쌍방 APA 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체결된 APA 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계별로는 34 건의 일방 APA, 145 건의 쌍방 APA 가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산업의 증가세: 체결된 APA 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제조업이며,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 관련 APA 는 전체 체결된 260 개의 APA 중 203 개로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APA 체결은 27 건으로 2005 년부터 2022 년까지 체결된 APA 의 약 10.4%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거래 유형: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APA 는 여전히 유형자산 거래에 집중되어 있으나, 기타 거래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 년부터 2022 년까지 체결된 213 건의 APA 중 55.5%가 유형자산 거래로 확인되며, 유형자산 이외의 거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PA 협상 효율성 개선: 2022 년에 체결된 19 개의 일방 APA 건은 모두 24 개월 이내에 체결되었습니다. 일방 APA 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 발표로 인해 일방 APA 협상의 효율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년에 신규로 체결된 15 건의 쌍방 APA 중 10 건은 24 개월 이내에 협상 및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5 건은 24 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쌍방 APA 의 체결은 납세자가 제출한 문서의 신뢰성, 사건의 복잡성, 납세자의 신고 시기 및 과세당국 양측의 사건 진행 의사와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여전히 APA 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입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2005 년부터 2022 년까지 체결된 APA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으로, 사용 비중은 83.5%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세당국은 가치 창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중요한 기여도와 시장 프리미엄, 그리고 비용 절감과 같은 특수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045 (2023.11.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실관계

[거래개요]

- 원고는, 이BB가 설립한 전자부품, 스프링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BB의 큰아들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AA이 원고 지분의 49.03%를 보유하고 있고, 이AA을 포함한 가족들이 원고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원고는 2005년 건강가전사업부를 신설하여 침구청소기 제조·판매를 시작하였고, 2011 년 11월부터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시□□'라는 일본 전자제품 도매업체를 통하여 일본에 침구청소기를 수출하였음
- 이AA은 2012년 6월경 전액을 출자(엔화 500만 엔)하여 레□□□□(이하 '레□□□□')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3년 5월경부터 레□□□□을 통해 일본에 침구청소기를 수출하기 시작(이하 '이 사건 거래')하였음

[원고의 법인세 신고]

- 원고가 2011년 11월 시□□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시□□에 판매한 침구청소기 가격은 구형모델(BG-200) 기준 대당 미화 102.3달러(약 114,324원)임
- 이 사건 거래 이후 원고의 레□□□□에 대한 판매가격은 대당 6,438엔(약 70,045원)이 고, 레□□□□의 시□□에 대한 판매가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화 102.3달러(약 114,324 원)임. 원고는 레□□□□이 단순판매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함께 각자 기술과 마케팅무형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내지 2016년 각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2) 처분 경위

-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0. 부터 2018. 12. 27. 까지 원고의 2014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레○○○○이 단순판매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아, 레○○○○을 분석대상법인으로 정한 다음 레○○○○의 비교 대상회사로 5개 회사(이하 '선행 비교대상회사들')를 선정하고 레○○○○의 영업이익률 중 선행 비교대상회사들 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득조정율로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출(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하였음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별지1 목록 제1항 '당초 이전소득금액(A)'란 기재 각 돈을 원고의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원고에게 위 돈을 레○○○○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2020. 3. 1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당초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A)'란 기재 2014년 사업연도 및 2015년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원고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각 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되 비교대상 선정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
-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출하되, 레○○○○의 비교대상회사로 6개 회사(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를 재선정하고, 레○○○○의 영업이익률 중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의 중위값을 초과하는 값을 소득조정율로 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재산출한 다음 2022. 5. 2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내지 2015 사업연도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22. 5. 20.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내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였음

3)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비교대상거래와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확보되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

취급 제품의 종류, 품목의 수, 판매 채널, 사업활동의 기능 등에 있어서 레○○○○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나) 피고들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기속되어 그 결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기준 거래와 비교대상 거래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데[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비교 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거래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없음. 그러나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레○○○○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레○○○○과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해서는 안됨. 오히려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레○○○○과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익분할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 아님

4) 쟁점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5) 판결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정상가격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6)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레○○○○의 주주는 이AA 1인인 점, 원고도 2014~2015년에는 레○○○○의 광고비를 부담하고, 레○○○○이 판매하는 침구청소기 관련 시험연구비를 지출한 반면, 레○○○○은 원고의 침구청소기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한 디자인 및 컨셉 개발, 재판매 등 사업을 한 점,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2016년 중반까지는 일본 현지 매출은 시□□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이 원고와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레○○○○은 침구청소기 단일 제품을 원고로부터 수입하여 일본 현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금속제품, 공작 기계, 물류보관용품, 연구관리용품 등 약 50만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의류, 생활용품, 가구 및 식품, 잡화 등 약 7,500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산물, 산업용 펌프, 환경 설비, 석유 화학 플랜트 공사 설계, 건축 자재 판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피고들은 레○○○○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본 다음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회사들 중에는 일본 내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 직영 점포를 통해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환경설비나 플랜트 설비를 직접 설계한 후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대상회사들의 거래단계가 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은 레○○○○과 비교하여 취급하는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함

나) 피고들은 레○○○○이 연구개발이 아닌 판매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하였는데 관세법위반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레○○○○은 연구개발직을 비롯하여 총 50여명의 인력과 조직까지 구비하여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로 대한민국에서 개발·제작된 침구 청소기의 일본에서의 판매를 위한 디자인 및 컨셉 개발, 반품 재판매 등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2,800건에서 8,500건의 판매 후(A/S) 서비스 처리, 일본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담당하였고, 일본 소비자의 트렌드와 니즈를 파악하여 원고에게 신제품 기획을 제안하는 역할, 상표권 등록 역할 등도 수행하였음. 반면 이 사건 대상회사들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서 광고선전비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고, 피고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판매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레○○○○이 단순히 원고로부터 수입한 침구청소기의 판매 업무만 담당한 회사로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 수행하는 기능이 유사한 회사라고 볼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기능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도 피고들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다) 피고들은, 원고가 선행적으로 침구청소기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레○○○○이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원고의 대표 이사에게 급여 및 배당의 형식으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④ 원고는 1990년대말부터 한국내 주력사업인 자동차부품사업의 정체와 중국 동관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차입금이 증가하던 중 의사이던 원고의 대표이사 이AA이 가업을 승계한 후 신사업으로 개발·출시한 침구청소기를 2011년부터 일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 특유의 양판점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상 시□□와 같은 도매상을 통한 거래에 대한 돌파구로 침구청소기의 홍보, 판매촉진, 반품 관리와 재판매

등을 담당할 레○○○○을 설립하기에 이른 점, ② 원고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침구청소기의 일본 내 판매를 위하여 외국회사에 폐쇄적인 일본의 특유한 양판점 유통구조 개척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 전에 비하여 낮게 책정한 가격에 레○○○○에 침구청소기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레○○○○은 수출가격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 중 상당액은 침구청소기의 일본시장에서의 안착, 그와 관련한 인적, 물적 시설의 마련을 위한 투자 및 마케팅과 광고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13년 5월 레○○○○에 침구청소기를 판매한 금액 6,438엔은 그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가별 판매단가(중국 60달러, 홍콩 65달러, 인도네시아 60달러, 체코 55달러)와 차이가 별로 없는 비슷한 가격인 점, ⑤ 레○○○○은 이 사건 거래를 할 당시인 2014년 및 2015년 광고선전비로 연평균 약 1,693,045,000엔을 지출한 점, ⑥ 원고가 시모코에 침구청소기를 직접 판매할 때와 레○○○○을 통해 수출할 경우와의 수출가격 차액 중 주된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광고·판매 촉진·PR활동·콜센터 운영 등 판매비 및 관리비, 개발비, 영업외 비용, 제세공과금, 반품을 인수하거나 제품 개선 등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됨으로써 레○○○○ 자체에 소요 내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레○○○○은 침구청소기의 일본 내 판매 확대를 위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원고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취소 범위 및 결론]

- 가)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고, 이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근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위법성이 모두 제거되는 경우 2015~2016 각 사업연도의 전체적인 법인세액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정당한 법인세 및 가산세의 각 세액 전부를 새로이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함
-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03

Operation TP Platform (OTP) 소개

IT 시스템에 기반한 자동화 “TP·관세 통합 솔루션”

[배경]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BEPS 2.0 도입 등에 따라 해외 자회사들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TP 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외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적시TP관리 및 의사결정에는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삼정KPMG에서는 ERP 데이터에 기초한 해외법인 운영관리 플랫폼인 OTP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 OTP는 담당자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Manual 방식이 아닌 ERP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자회사들의 손익 데이터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추출과 직관적인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이익수준지표(PLI, Profit Level Indicator)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 TP조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 예산 vs. 실적 PLI 차이 등 모니터링 및 일정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Risk Alarm 생성)

- 해외법인의 회사의 예산, 누적실적, 목표 이익률과 품목별 관세 과세가격이 연계된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법인별로 TP·관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물대가격 조정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예: 조정대상 품목, 수량, 가격, 조정대상금액을 시스템에서 자동계산)

OTP 플랫폼 관련 문의사항은 주성산 이사(010-8986-4931) 또는 박민석 매니저(02-2112-306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 관세

유럽의회, EU 산림 전용 방지 규정 (EUDR) 최종 채택

- 삼림벌채와 연루된 커피·고무 등 물품의 수입 금지

1) 산림 전용 방지 규정(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 Regulation)이란?

- 2023년 6월 29일, EU는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시장 공급 및 수출에 관한 규정」을 발효함
- 해당 규제는 '산림 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및 제품에 관하여 삼림 벌채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삼림에서 새로이 용도가 전환된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임

-
- '전용(Deforestation)' 이란 산림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산림을 어떤 형태로든 보존하지 않고 농업용, 공업용, 도시화 등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EU시장에 관련 물품을 판매하려는 제품이 산림 전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실사를 통한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 및 입증 해야함

2) 적용 대상 물품

- 동 규제의 적용 대상 물품은 크게 고무, 소(cattle),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의 7개 상위 품목군이며, 해당 상위 품목군의 파생 제품 (예: 소를 도축하여 만든 육류제품, 이를 가공하여 만든 소시지, 가죽제품 등)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 산업이 매우 광범위함
- 규제 대상 물품은 글로벌 공통인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3) 적용 대상자

- 규제 대상 품목을 EU 시장에 수입하여 생산, 판매, 수출하는 자로, 사업장이 EU에 소재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으로 분류됨
- 운영자(Operator)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상업적 활동으로 관련 제품을 EU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U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EU내 등록된 사무소, 지사, 영구 사업장이 있는 수입업자는 Operator로 간주됨
- 거래자(Trader)는 위 상업적 활동에서 관련 제품을 EU 시장에 제공하는 공급망에 속한 운영자 외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EU 시장에서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이에 해당함
- EU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본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나, 공급망을 실사하고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작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간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함

4) '산림 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한 의무 사항

- 규제 대상 법인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실사선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① 제품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
 - ② 관련 규정(노동권 및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 UN선언에 명시된 원주민의 인권, 토지사용권, 환경보호, 산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산림 관련 규칙 등)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입증
 - ③ 생산국 및 토지의 위치 정보, 생산 일자 및 수량, 제품을 공급한 기업 정보, 물품의 HS Code 등 기재
-

5) 규제 위반 시 제재사항

- 규제 미 준수 시 요건 시정, 수출 및 공급 금지, 제품 회수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환경 피해와 규제 대상 품목의 가격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4% 이상 부과 조치될 수 있음

6) 규제 적용 Time-Line

- 2023년 6월 29일 발효 이후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5년 1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24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2025년 7월부터 규제 적용 예정임

[KPMG 의견]

EUDR 규제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별 산업을 고려한 상세 규제 내용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8개월의 유예기간에 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산업별 주요 Stakeholder의 공동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며, KOTRA 및 EU 주재 상무관 등과도 협업하여 유예기간 내 규제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U는 ESG 경영을 매우 강조하는 권역 중 하나로, 향후 현재 7개 제품군에서 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옥수수까지 제품군이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기업은 EUDR 규제의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